

조 례 안 예 고

통영시의회 공고 제 2022-7호

통영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「통영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의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77조 및 「통영시의회 회의규칙」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3월 3일

통 영 시 의 회 의 장



1. 자치법규명: 「통영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2. 제안이유

가. 「스포츠클럽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정에 따른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을 추가하고 기존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공공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「스포츠클럽법 시행령」에서 규정한 감면 대상에 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(안 제13조제1항, 제3항제18호)
- 나. 기존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을 현실에 맞게 내용 및 용어를 명확하게 정리하여 반영(안 제13조제2항제4호, 제7호, 제3항제4호)
- 다. 지자체 경쟁제한 및 소비자권익제한 자치법규 규제개선 추진에 따라 운영자(지자체) 귀책으로 인한 손해배상 규정 조례에 반영(안 제14조)

4. 의견제출

가. 제출기한: 2023년 3월 9일까지

나. 제출방법: 우편, 서면, 팩스 등

다. 의견제출 사항

- (1)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이유)
- (2) 성명(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, 전화번호
- (3) 기타 참고사항 등

라. 의견서 제출처: 통영시의회의장(참조: 의회사무국장)

- (1) 주 소: 우)53040 통영시 통영해안로 515(무전동, 통영시의회)
- (2) 전화번호: 055-650-2943(Fax. 055-650-2999)

붙임 조례안 1부.

통영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통영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.

제13조제1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
2. 「스포츠클럽법 시행령」 제11조제1호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서 행사·강습·훈련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

제13조제2항제4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. 통영시체육회 산하 각 종목 협회

제13조제2항제7호 중 단서를 삭제하고, 같은 조 제3항제4호 중 “**경남i-다누리카드**”를 “**경남아이다누리카드**”로 하며, 같은 항에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8. 「스포츠클럽법 시행령」 제11조제2호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을 제외한 스포츠클럽에서 행사·강습·훈련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

제14조제1항제1호나목을 삭제하고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④ 제1항 각 호 외 사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「소비자분쟁해결기준」에 따른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3조(사용료의 감면) ① <u>시장은 체육시설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<신 설></u></p> <p>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80을 감면할 수 있다.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4. 다음 각 목의 단체(해당 단체의 지역단체, 가맹 경기단체를 포함한다)가 주관하는 행사 가.·나. (생략)</p> <p><u><신 설></u></p> <p>5.·6. (생략)</p> <p>7. 시를 대표하여 제6호 이외의 각종 체육대회에 참가하기 위한 연</p>	<p>제13조(사용료의 감면) ① <u>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.</u></p> <p>1. <u>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</u></p> <p>2. 「<u>스포츠클럽법 시행령</u>」 제11조제1호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서 <u>행사·강습·훈련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</u></p> <p>②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----- ----- -----</p> <p>가.·나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다. 통영시체육회 산하 각 종목 협회</u></p> <p>5.·6. (현행과 같음)</p> <p>7. ----- -----</p>

습목적으로 사용할 때(다만, 대표
팀별 연 2회로 한정한다)

8.·9. (생략)

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.

1. ~ 3. (생략)

4. 다자녀가정으로서 경남i-다누리카드 소지자

5. ~ 17. (생략)

<신설>

④ ~ ⑥ (생략)

제14조(사용료의 반환 등)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.

1. 전부 반환

가. (생략)

나. 시의 귀책사유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

다. (생략)

2.·3. (생략)

-----<단서
삭제>

8.·9.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

-----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4. ----- 경남아이다누리카드 -----

5. ~ 17. (현행과 같음)

18. 「스포츠클럽법 시행령」 제11조제2호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을 제외한 스포츠클럽에서 행사·강습·훈련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

④ ~ ⑥ (현행과 같음)

제14조(사용료의 반환 등) ① -----

-----.

1. -----

가. (현행과 같음)

<삭제>

다. (현행과 같음)

2.·3. (현행과 같음)

②·③ (생략)

<신설>

②·③ (현행과 같음)

④ 제1항 각 호 외 사용료 반환에
관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고
시 「소비자분쟁해결기준」에 따
른다.

□ 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

제5조(전문체육시설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내·외 경기대회 개최와 선수 훈련 등에 필요한 운동장이나 체육관 등 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체육관은 체육, 문화 및 청소년 활동 등 필요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,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.

제6조(생활체육시설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을 운영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생활체육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이나 기구를 마련하는 등의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,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.

□ 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

제4조의2(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)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5조 제3항 및 제6조 제3항에 따라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이 제1호에 따른 행사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고,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사 또는 활동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

의 일부를 감경할 수 있다.

1.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
2. 다음 각 목의 단체(해당 단체의 지역단체,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)가 주관하는 행사
 - 가.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
 - 나.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
- 다. 삭제 <2016. 8. 2.>
3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
4. 65세 이상의 사람, 장애인 및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
5.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
6. 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
7. 그 밖에 사용료 감경이 필요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행사 또는 활동

□ 스포츠클럽법

제15조(공유재산의 우선 수의계약 및 사용료 감면 등) ① 지방자치단체는 공익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20조 및 제27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체육시설에 대하여 우선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허가하거나 수의계약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클럽이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을 사용

하는 경우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이나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.

□ 스포츠클럽법 시행령

제11조(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 사용료의 감면)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스포츠클럽이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을 스포츠클럽의 행사·강습·훈련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.

1. 지정스포츠클럽: 사용료의 100분의 100 이하
2. 지정스포츠클럽을 제외한 스포츠클럽: 사용료의 100분의 80 이하